



프랑스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

정보신청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I. 머리말

프랑스의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는 환경과 개발, 에너지와 원료, 산업안전, 교통과 기반시설, 건설, 도시계획과 토지정비, 농촌 및 산림정비, 국토·해양 개발과 정비 그리고 조선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 장관인 국무장관의 권한에 관한 명령(Décret n° 2007-995 du 31 mai 2007 relatif aux attributions du ministre d'Etat,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의 장관인 국무장관(Ministre d'Etat) 하에 교통을 책임지는 차관(Secrétaire d'Etat chargé des Trans-ports)과 환경을 전담하는 차관(Secrétaire d'Etat chargé de l'Ecologie)이 있다.

특히,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는 설비분야에 있어서 기반시설, 건물 및 공공사업의 경제적 문제들을 검토하며, 도로시설의 정책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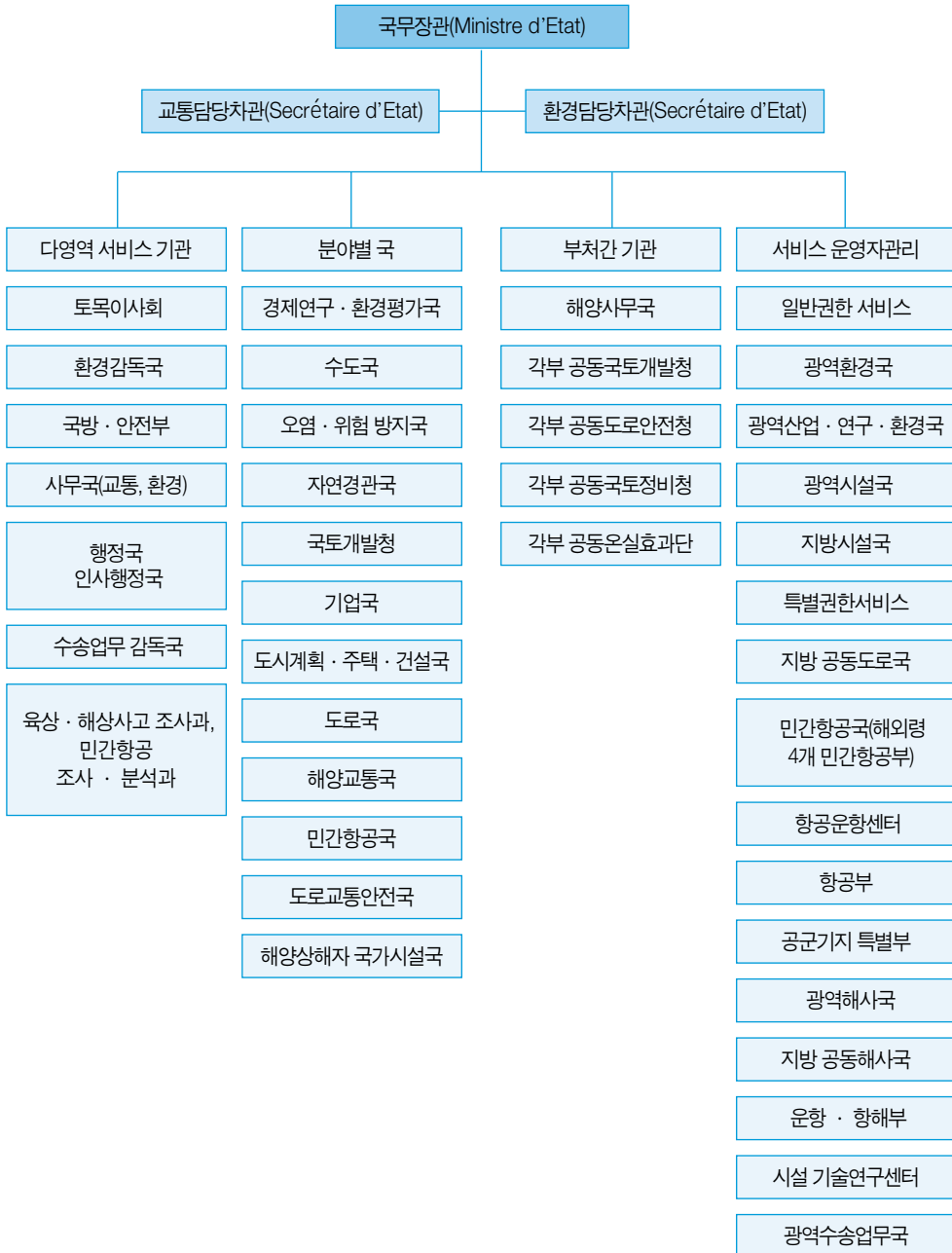
립·시행하고, 건물 건축과 관련된 기술적 지침들을 마련한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토지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수용에 관한 입법, 도시계획 또는 도시정비에 관한 재정 및 조세 관련 입법을 담당한다.

위의 모든 업무는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의 도시계획·주택·건설국(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바, 아래에서 도시계획·주택·건설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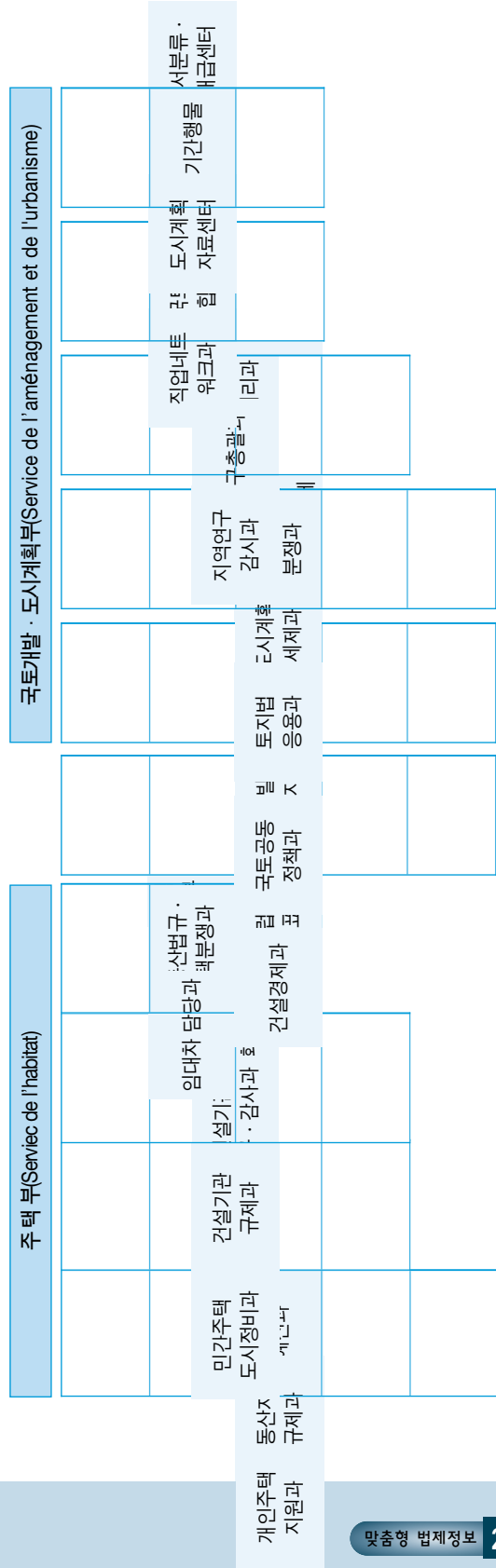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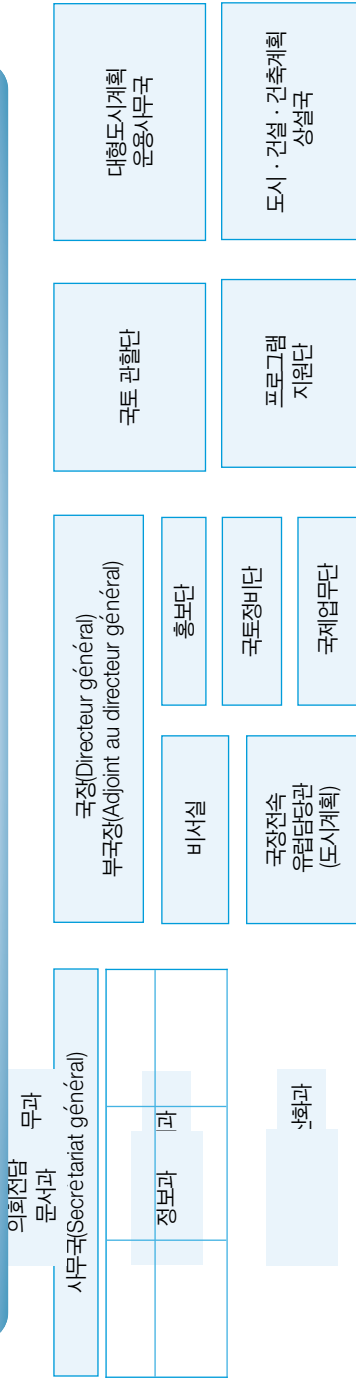
II. 도시계획·주택·건설국(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DGUHC))의 설치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1998년 기존의 '토지정비·도시계획국' (Direction de l'aménagement foncier et de l'urbanisme)과 '주택건설국'

프랑스 환경 · 국토개발 · 국토정비부 조직도



도시계획 · 주택 · 건설국(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DGUHC))





(Direction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이 통합된 부서이다. 통합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 업무 중, 도시계획정책과 주택건설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히 지방이전 정책의 범주 내에서 국토정책의 방향과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1998년 총리령(Décret n° 98-141 du 8 mars 1998)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업무와 조직은 아래와 같이 부처간 명령(Arrêté interministériel)과 부령(Arrêté ministériel)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 ①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조직에 관한 부처간 명령(arrêté interministériel du 16 mars 1998 portant organis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
- ②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단(團), 사무국 및 부국(副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부령(arrêté ministériel du 23 avril 1998 fixant l'organisation et les attributions des missions, des secrétariats généraux et des sous-directions de la Direction Générale);
- ③ 도시계획·건설·건축계획 개발에 관한 부처간 명령(arrêté interministériel du 23 avril 1998 portant création du plan urbanisme construction architecture);
- ④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조직에 관한 명령(arrêté du 6 juillet 2005 portant organis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 l'urbanisme,

de l'habitat et de la construction).

2005년에 시행된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조직 개편은 2001년 8월 1일 재정법에 관한 국가조직법(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du 1er août 2001)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도시계획·주택·건설국 내에 주택부와 국토개발·도시계획부 설립이 조직개편의 주요한 골자를 구성하였다.

Ⅲ.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기능과 역할

1. 주요 업무

(1) 도시개발과 주택업무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재정에서 건설기관의 감사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과 주택에 공통되는 실제적인 정책을 총괄한다.

(2) 정책수립·입법 업무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감시, 연구, 평가 및 장기경제전망 등의 활동을 통하여 중장기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도시계획의 방법 및 수단을 개선하고 도시계획법과 주택법을 현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질적 향상 및 해당 업계 업무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건설기술정책을 추진하고 해당 부처가 실시하는 일련의 건설 관련 종합연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 그리

고 국토 정비와 연관이 있는 업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2. 역할

(1) 기술적 측면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건설과정과 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가, 도시계획가, 연구소, 기업, 건축주와 같이 건설 관련 종사자의 활동에 직접 개입한다. 아울러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내 건설 분야에 미치게 될 경제적·사회적·기술적 도전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 종사들에게 혁신을 유도하며 이를 위해 풍부한 프로그램의 지원과 건설 관련 규범을 창출한다. 또한 건설의 기술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즉, 위험의 예방, 안전의 향상, 건강과 환경보호, 소음 및 투자비용의 규제와 같은 모든 영역에 간섭한다.

(2) 사회적 측면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공공 임대주차장의 건설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재정, 국가보조금 제도 및 주택조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과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실시하며 주택정책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을 유도한다. 1999년

에는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주도 하에 약 140,000 세대에 이르는 사회임대주택이 건설되었고, 약 341,000 세대가 재개발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PLUS(Prêt Locatif à Usage Social)¹⁾를 도입함으로써, 임대료의 하락을 통한 사회통합과 접근가능성이라는 사회보장을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

(3) 도시계획 측면

도시계획 및 공용수용에 관한 입법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국토개발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공공·민간 개발 시행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시행과 토지 정책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총괄한다.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은 그 외에도 도심의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또는 대형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V.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조직

1. 주택부(Service de l'habitat)

주택부의 주된 역할은 주택법규의 정비와 실제적인 정책의 운용이다. 또한 법규의 정비와 정책의 운용에 필요한 재정, 조세 그리고 규제적인 수단을 검토하며, 특히 주택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



1) 1977년 이후 시행되어 온 임대주택 특별용자제도(Prêt Locatif Aide)가 PLUS(Prêt Locatif à Usage Social)와 PLAI(Prêt Locatif Aide d'Intégration)로 분리되었다. 현재 PLUS는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며 PLAI는 더 취약한 계층의 주택건설을 위해 제공된다.



한다. 주택부는 공공주택 건설기관과의 관계를 정립 또는 관리하며,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권한 범주 내에서 사회연대 정책, 도시혁신 그리고 주택법규의 시행을 주도한다. 주택부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부국(副局)으로 구성된다.

(1) 재정·예산 부국(Sous-direction du financement et du budget)

재정·예산 부국은 주택에 관한 재정, 보조금 제도 그리고 주택 조세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도시계획과 주택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주택 건설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과 개인주택 보조금의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재정·예산 부국에는 재정조사과, 예산과, 부동산 지원 규제과 그리고 개인주택 지원과가 있다.

(2) 도시정비·주택 부국(Sous-direction des interventions urbaines et de l'habitat)

주택 분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운용 방법 등을 정비한다. 도시정비·주택 부국은 주택건설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해 지방의 자치단체와 교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평가 및 감사한다. 또한 주택 및 도시의 재정비에 관한 부처간 정책의 수립에 협조한다. 도시정비·주택 부국에는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주택정책·혁신도시과 그리고 민간주택 도시정비과가 있다.

(3) 건설기관 부국(Sous-direction des organismes constructeurs)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공주택의 건설

에 참여한 사용자 단체를 규제 및 관리한다. 즉 공공주택 담당 기관과 사용자 단체의 권한, 지위 그리고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한다. 건설기관 부국에는 건설기관 현대화·감사과, 건설기관 연구·감사과 그리고 건설기관 규제과가 있다.

(4) 주택법 부국(Sous-direction du droit de l'habitat)

주택 및 주택의 점유 방식에 관한 법적 제도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건설업자의 지위, 소유권 관리 방법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택법 부국은 주택과 건설 영역에서 소송이 개시될 경우 행정재판소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주택법 부국에는 부동산법규·주택분쟁과와 임대차 담당과가 있다.

2. 국토개발·도시계획부(Service de l'aménagement et de l'urbanisme)

국토개발·도시계획부는 장기적인 도시정책의 설립과 그 정책의 실제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 운용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절충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설정하고 감시한다. 아울러 국토개발·도시계획부는 도시계획법과 공공수용 및 정비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권한 전반에 관한 연구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개발·도시계획부는 4개의 부국(副局)과 1개의 센터로 구성된다.

(1) 국토계획·개발 부국(Sous-direction de la planification et de l'aménagement)

도시정비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책의 구상·검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의 토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유지상의 공공건물을 감독한다. 국토계획·개발 부국은 국토 개발 시 퇴거, 주택, 위험예방 그리고 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연안지대와 산악 개발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한다. 국토계획·개발 부국에는 국가전략과, 도시·농촌 계획과, 개발경제·토지정책과 그리고 국토공동정책과가 있다.

(2) 도시계획법규 부국(Sous-direction du droit de l'urbanisme)

도시계획에 관한 규제와 입법을 검토·수립하며, 도시계획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와 재정에 관한 입법을 담당한다. 도시계획법규 부국은 상기 입법에 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동 지침의 적용을 감시한다. 도시계획법과 토지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련하여 분산된 업무를 총합하며 도시계획법에 관한 국가의 소송을 수행한다. 도시계획법규 부국에는 입법·규제과, 도시계획분쟁과, 도시계획세제과 그리고 토지법 응용과가 있다.

(3) 연구·감시 부국(Sous-direction de l'observation et des études)

국토개발과 도시계획 분야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수집한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토개발과 도시

계획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통계작성, 국토의 분석과 지도제작의 개선에 참여한다. 연구·감시 부국에는 통계분석처리과, 연구총괄과 그리고 지역연구·감시과가 있다.

(4) 국토개발직종 부국(Sous-direction des métiers de l'aménagement)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에 참여하는 업계와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토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구·감시 부국은 측량기사 협회에 대한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며 건축사 이사회와 조경사 이사회를 관리한다. 국토지원 종합연구과와 직업네트워크과가 있다.

(5) 문서분류·배급센터

3. 건설품질·개발 부국(Sous-direction de la qualité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dans la construction)

주택부와 국토개발·도시계획부 사이에 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건설품질·개발 부국(Sous-direction de la qualité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dans la construction)이 있다. 건설품질·개발 부국은 도시계획·주택·건설국 부국장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거주자 및 소유자 또는 건설 관련 업계의 기대와 욕구를 고려하여 주택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한다. 건설품질·개발 부국에는 건설품질·예방과, 국토활동협력과, 유럽담당 및 표준과 그리고 건설경제과가 있다.



4. 사무국

(1) 대형 도시계획 운용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des grandes opérations d'urbanisme)

국가 및 특히 신도시가 주도하는 대형 국토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파리지역 토지기술국과 프랑스령 기아나(Guyane)의 국토개발기관과 같이 특정 국토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준국영 회사를 감독한다.

(2) 도시·건설·건축계획 상설국(Secrétariat permanent du plan urbanisme construction architecture)

도시계획과 건설 및 건축 계획이 통합된 이후부터 부처간 연구·실험·혁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업계 및 기술전문가 그리고 전문 행정가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건설·건축계획 상설국에는 건설 관련 분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와 실험 및 연구 프로그램의 과학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학이사회가 있다.

5. 단(團)

(1) 프로그램 지원단(Mission d'appui aux programmes)

프로그램 지원단은 2001년 8월 1일 재정법에 관한 국가조직법의 시행으로 인해 주택부와 국토개발·도시계획부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각

부의 장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과 관련하여 환경·국토개발·국토정비부의 인사행정국 및 사무국과 지속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지원단에는 정보시스템과(Bureau des systèmes d'information)와 권한·업무관리과(Pôle de gestion des moyens et des compétences)가 있다.

(2) 국토관할단(Mission territoriale)

국토정책을 담당하는 각각의 부와 부국을 지원하며 정책의 이행여부를 분석한다. 그리고 국토관할단은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단과 협력하여 각 부서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 또는 권한의 변동사항 등을 검토하여 각 부의 장을 조력한다.

(3) 국토정비단(Mission d'aménagement durable)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해당 부서의 권한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토정비에 관련된 중요 사안을 정리한다.

(4) 국제업무단(Mission des affaires internationales)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을 대표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외국에 파견할 전문가 집단을 선발하며 동시에 외국대표단의 안내를 수행한다.

(5) 홍보단(Mission de communication)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홍보정책을 총괄한다.

6. 인원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직원은 업무와 권한에 따라 행정, 기술, 재정, 조세, 건축, 도시계획, 사회학, 공법 및 사법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도시계획법규 부국과 주택법 부국에는 법학자, 국토개발·계획 부국에는 도시계획가 그리고 국토개발 직종 부국에는 기술자 등이

배치된다. 1999년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직원 수는 500명으로 한정되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을 갖는 대형 도시계획 운용 사무국의 직원 및 해당 부처의 계약직에 재배치된 24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3년과 2004년 도시계획·주택·건설국의 직원은 각각 509명과 503명이었으며 2006년에는 그 보다 적은 465명이었다.

정 영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